

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폭행·가혹행위죄의 행위유형에 협박, 회유 및
소환조사 남용 추가〉

■ 박균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094호)

2024. 12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: 박균택의원 등 18인
2. 발 의 일: 2024. 8. 22.
3. 회 부 일: 2024. 8. 2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판, 검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,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,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,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)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 내용

개정안은 재판, 검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¹⁾에 더하여 협박, 회유 또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).

현행	개정안
제125조(폭행, 가혹행위) 재판, 검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	제125조(폭행, 가혹행위, 협박 등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----- -----.
<신 설>	1. 폭행
<신 설>	2. 가혹행위
<신 설>	3. 협박
<신 설>	4.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
<신 설>	5.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

1) 「형법」 제125조(폭행, 가혹행위) 재판, 검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대검찰청예규인 「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」에 따라 검찰과 법원 실무에서 쓰는 죄명은 '독직폭행(죄)' 및 '독직가혹행위(죄)'임.

2. 현행 폭행·가혹행위죄 개관

「형법」 제125조의 폭행·가혹행위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는 죄인바, 특히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폭행이나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헌법 제12조제2항²⁾의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실현되도록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할 국가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임.³⁾

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,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·육체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「형법」 제277조제1항 중체포·감금죄⁴⁾의 가혹행위와 같은 개념임.⁵⁾ 한편, 본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⁶⁾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됨.

2)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

3) 주석형법 제5판(각칙 I), 한국사법행정학회(2017), 304면(이상주).

4) 「형법」 제277조(중체포, 중감금, 존속중체포, 존속중감금)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(이하 생략)

5) 주석형법 제5판(각칙 I), 한국사법행정학회(2017), 307면(이상주).

6)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(체포·감금 등의 가중처벌) ①「형법」 제124조·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(傷害)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「형법」 제124조·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3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협박, 부당한 이익의 제공·약속 등 회유,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남용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첫째,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은 형사피의자 등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백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의자 등을 협박하거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·약속 등을 통해 회유⁷⁾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중하게 단죄할 필요성이 인정됨.

둘째,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기법 등 수사기관의 기존 수사 관행 등은 과거에 이른바 무리한 수사 또는 강압 수사 논란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,⁸⁾ 인신의 자유가 제약된 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잦은 소환⁹⁾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,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등에 대한

7) 강석구·주승희,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, 한국형사정책연구원(연구총서 19-AB-02, 2019), 17면에서는 위계·회유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한 경우를 '법왜곡 행위'의 일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.

8) 강압·회유·폭언·폭행... "검찰 조사 받고나면 치가 떨려", 조선일보, 2007. 2. 8. 기사(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07/02/08/2007020800054.html 2024.10.11. 최종 방문)

9) "검찰, 수감자 잦은 소환 말고 방문조사하라" 권고 -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, 인권 침해·과잉 수사 우려 -, 한국일보, 2020. 4. 13. 기사(<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4131775744905> 2024.10.11. 최종 방문)

협박, 회유 및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남용을 처벌하는 것은 인신구속 관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피의자 등의 신체적 안전 내지 인격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한편,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첫째,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제공·약속 등을 통해 피의자 등을 회유하거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바, 동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즉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장기간 범죄혐의를 추궁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과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다양한 수사기법과 강약조절 등이 있을 수 있는바, 이 중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수사의 영역이고 어느 지점부터 ‘부당한 이익제공과 회유’인지 그 경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복잡·방대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건일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구속 피의자를 여러 차례 소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이 경우 소환의 ‘남용’ 기준이 무엇인지 설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, 이와 같은 ‘부당한 이익제공과 회유’나 ‘소환조사의 남용’이라는 개념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¹⁰⁾

10)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,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, 한

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.

둘째, 수사기관이 협박, 부당한 이익 제공·약속을 통한 회유 등을 통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 현행 직권남용죄,¹¹⁾ 위증교사죄¹²⁾ 및 강요죄¹³⁾로도 처벌할 수 있는바, 개정안이 규정한 범죄와 현행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상호관계와 조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덧붙여,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사건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협박이나 회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필요한 고소·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,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위축과 수사의 독립성 침해 및 국가 수사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.

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,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담보하고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임. 다만, “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

정적 수식어의 사용,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 1992. 2. 25. 선고 89헌가104 결정 등 참조).

11) 「형법」 제123조(직권남용)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2) 「형법」 제152조(위증, 모해위증) ①범물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,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13) 「형법」 제324조(강요)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이하 생략)

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”나 “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”와 같은 구성요건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화할 방안 모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, 개정안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죄, 강요죄 등 현행 「형법」상 범죄와의 조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, 불명확한 구성요건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·고발 남용 등으로 이어져 수사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02)6788-5056